

감 사 원 고 발

제 목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횡령

피 고 발 인

성 명: F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근 무 처: 구미시 ♡국 ♣과

고 발 건 명 업무상 횡령

고 발 사 실

F은 2011. 7. 18.부터 2014. 7. 20.까지 구미시 ♡국 ♣과²²⁾에서 택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과 국토교통부가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등에 따라 구미시에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등 수입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가 징수·납입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7을 해당 시·군·구에 위임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삭제²³⁾)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22) 2015. 7. 31. ☆과에서 ♣과로 명칭이 변경됨

23) 2016. 5. 29. 제정된 「지방회계법」 제22조 제2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2009. 8. 21. 구 국토해양부 훈령 제361호) 제20조의²⁴⁾ 등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증가산금은 전액 국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²⁵⁾)에 귀속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징수하면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지체 없이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F은 2011. 7. 18.부터 2014. 7. 20.까지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3. 13.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13,783,510원이 구미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자, 분임징수관이 위 보통예금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F에게 맡겨두고 인출액이 시 금고 등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해 5. 29. 위 13,783,5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시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F은 [별표]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횡령 명세”와 같이 위 보통예금계좌에 2011. 12. 25.부터 2014. 3. 13. 사이에 6회에 걸쳐 입금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증가산금 및 예금이자 계 30,158,580원²⁶⁾ 중 30,133,510원을 2012. 2. 6.부터 2014. 5. 29. 사이에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시 금고 등²⁷⁾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²⁸⁾

24) 2016. 7. 20.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2가 삭제됨(2017. 1. 1.부터 시행)

25) 2009. 4. 2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2014. 1. 7. 지역발전특별회계로, 2018. 3. 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각각 변경됨

26)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26,806,330원,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증가산금 3,350,760원, 예금이자 1,490원, 계 30,158,580원

27)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증가산금 3,350,760원은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납입하여야 함

따라서 F의 행위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

28) F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8. 4. 19. 및 같은 해 4. 20. 30,133,510원을 구미시에 반환하였음

[별표]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회령 명세

(단위: 원)

입금 내용				현금 인출 후 회령 내용		
입금일	종류	입금자	금액	인출일	금액	사용처
2011. 12. 25.	예금이자	-	1,490	2012. 2. 6.	4,950,000	개인채무 변제 등
2011. 12. 29.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토교통부	4,942,890			
2012. 1. 31.	개발부담금 체납 증가산금	(주)-	3,350,760			
2012. 2. 7.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토교통부	3,474,970	2012. 2. 16.	6,800,000	"
2012. 5. 17.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토교통부	4,604,960	2012. 5. 29.	4,600,000	"
2014. 3. 13.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국토교통부	13,783,510	2014. 5. 29.	13,783,510	"
계			30,158,580		30,133,510	

자료: 구미시 제출자료